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에 행정자료 요청권 부여 및 통계데이터 활용 근거 신설〉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95호)

2026. 4.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회에 행정자료 요청권 부여 및 통계데이터 활용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6. 2. 24.

다. 회 부 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국회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여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회에 행정자료 요청권 부여 및 통계데이터 활용 근거 신설 (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 행정자료의 제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 요청 가능 -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 요청 가능 - <신설> - (이하 생략)	○ 행정자료의 제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국회사무총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미래연구원장(이하 “국회소속기관장”)</u>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 요청 가능 - (이하 생략)
○ <신설>	○ 통계데이터의 제공 - <u>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국가데이터처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하 “통계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통계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통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u> 1. 국회의원 2. 국회소속기관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분석을 지원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국회소속기관장(이하 ‘국회소속기관장’이라 함)이 정책분석 및 입법과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공공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기관장 등이 통계 기초자료와 가공·분석된 데이터(이하 ‘통계데이터’라고 함)를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시설 내에서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국회의 입법 및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국회의 독립적인 정책 분석 및 입법 지원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현재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은 정부 정책의 비용추계 및 효과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생산·가공한 ‘통계 결과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화된 사회

1)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의 원천이 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회 소속기관 등이 보안시설 내에서 비식별 처리된 통계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요약되고 가공된 정보의 한계를 넘어 입법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상 행정자료 요청 주체의 한계로 인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책 분석 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소속기관장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행 「국회법」상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²⁾, 이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국회사무처를 제외한 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법」상 ‘행정자료 제공 의무’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자료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소속기관장을 요청 주체

2)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특히, 동 개정안은 자료 제공 시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비식별화)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된 엄격한 보안시설(통계데이터센터 등) 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자료 활용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통계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안 내용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통계법」은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³⁾, 제24조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권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직접 조사하는 대신 행정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임. 반면, 개정안이 국회 소속기관에 부여하려는 자료 요청권은 ‘통계의 작성’이 아닌 ‘정책분석 및 입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한을 통계 제도 규율을 위한 본 법에 명시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혹은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통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현행 자료 이용 제도와 중복 가능성 및 입법의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이 타당성을 심사하여 비식별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⁵⁾ 현행 규정을 통해서도 국회 소속기관 등이 정책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

4) 「통계법」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참고로, 현재 국회도서관 건물에도 통계데이터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분석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특히,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분석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이 보안시설 내에서 방대한 기초자료 및 통계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리스크와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처의 추가적인 행정적·인력적 부담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제공 심사 시 국회의 입법 및 정책분석 목적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하거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요구권과의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자료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소속기관 등의 입법 활동 및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계법」상 자료 요청권은 통계 작성의 효율성 제고와 응답자의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조치인바, 통계 작성이 아닌 국회의 정책 분석 및 입법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까지 본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령의 성격상 수용하기 어렵

다는 입장임.

또한, 통계데이터의 직접 분석권 신설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데이터센터 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이하 “국회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제4항까지----- ----- ----- ----- -----.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5항----- ----- ----- ----- -----.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⑦ 제5항----- ----- ----- ----- ----- -----.

현행	개정안
⑦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 ⑤ (생략) <신설>	⑧ 제5항----- ----- -----. ⑨ ----- ----- --제7항----- -----제8항----- -----.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통계데이터의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국가데이터처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통계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통계데이터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직접적

현행	개정안
	<u>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u> 1. <u>국회의원</u> 2. <u>국회소속기관장</u>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④ ----- ----- -----. 1. 제24조제8항----- ----- ----- ----- -----

현행	개정안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3